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1/8 통권 170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5년 1월, 홈택스 확 바뀐다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우리 기업의 핵심 리스크의 실무적 관리
- 12월말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초에 받는 성과급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5년 1월, 홈택스 확 바뀐다
-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 알아두세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에서 육아휴직복귀자의 급여 없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소득 포함하지 아니함 (p.12)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이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건강보험료가부과되는 각종 소득과 재산범위 및 평가율>

소득·재산	부과계산방법, 소득평가율
주직장급여	총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 7.09%를 근로자 본인이 50%, 회사가 50% 부담
다른 소득	연간 소득 총액에서 연 2천만원 초과액의 7.09% (연간보수외 다른 소득 - 2천만원)×소득평가율×7.09%
이자·배당	총소득평가율 100%로 함(비용공제금액 없음)
사업소득	총소득평가율 100%로 함(실제 매출대응경비는 비용반영 계산됨)
기타소득	세후순액(법정경비 80%나 60% 제외 후 40% 소득) 100%로 함
알바근로소득	소득평가율 50%로 함(나머지 50%는 다른 직장 부담)
일용근로소득	1개월 이상 근무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
자유직업사업소득	지급총액×3.3%(매월) 원천징수납부 후 종소반영
연금소득	총소득평가율 50%로 함(연금이므로 평가율은 반입)
퇴직소득	일시소득이므로 부과되지 않음
양도소득	일시소득이므로 부과되지 않음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09호 / 주간 2호

2025. 1. 8.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각종 소득과 재산범위 및 평가율	표지
CEO의 경영산책	우리 기업의 핵심 리스크의 실무적 관리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태양광 자가용 PPA 관련 사업자등록 & 업종 추가 문의	5
	- 세금 계산서 발행 문의	6
	- 차량 렌탈관련 회계처리	
눈에 맞는 절세미인	12월말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초에 받는 성과급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9
	- 새해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10
직장인 Survival	직장에서 탄탄한 관계 만드는 법 ②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23, 2024.06.20)	12
	-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211, 2024.02.26)	13
세정 뉴스와 해설	더 똑똑해진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도 알아서 '적척'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에서 육아휴직복귀자의 급여 없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소득 포함하지 아니함	12
세무정보	- '25.1월, 홈택스 확 바뀐다	15
	-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	18
회계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32
	-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39
	-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1

# 우리 기업의 핵심 리스크의 실무적 관리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2025년 수출 전망 조사’결과, 응답 기업들은 2025년 수출이 올해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11.1%) 등을 지목했다. 2025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신제품 개발 등 제품 경쟁력 강화(27.6%)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27.6%) △수출국가 다변화(18.4%) 등을 꼽았다.

## 핵심 리스크 (key risks)

기업의 많은 리스크 가운데 특히 조직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핵심 리스크(key risks)라고 한다. 모든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간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히 중요한 리스크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핵심 리스크는 조직마다 상이하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요 거래처의 공급 계약 및 품질관리가 핵심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업무별로는 IT업무의 경우 시스템 가동중단, 해킹 및 정보 유출이 고려될 수 있다. 인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직률, 노사관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윤리강령 위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운송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정시도착률과 차량 사고 발생 건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고객클레임 건수, 샘플링 결과 불량률 등을 핵심 리스크 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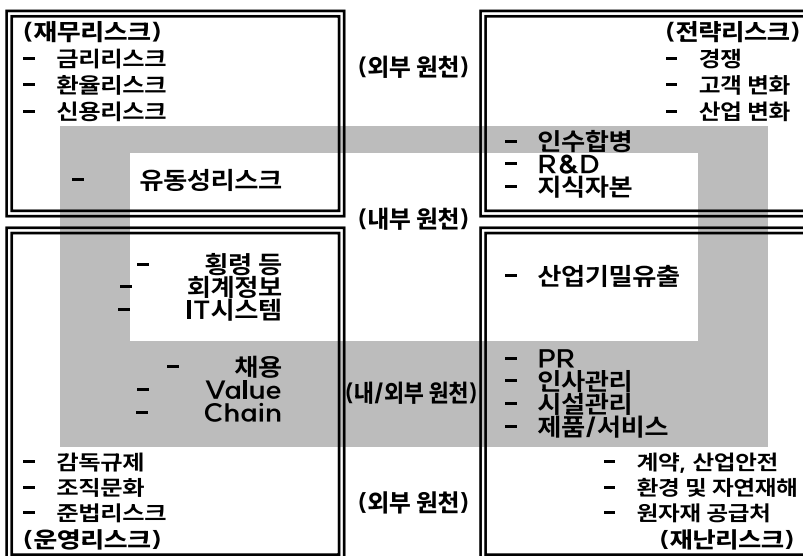
## 핵심 리스크의 원천과 연계

기업의 경영환경이 상이하므로 핵심 리스크 원천은 다양하다. 리스크 원천을 크게 내부원천과 외부원천, 그리고 내외부 원천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외부 원천 리스크 요인의 대표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이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원화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은 우리 기업에 핵심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다른 외부 원천에 의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략리스크에 속하는 ‘경쟁’이 있다. 최근 중국 전기자동차의 급부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 바겐의 공장 폐쇄, 일본의 닛산- 혼다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한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배출량 관리, 오염물질 배출이나 산업안전, 인권경영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청된다.

내부 원천은 조직 내부에서 발원한 리스크이다. 우선 재무리스크에 해당하는 유동성리스크가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부적절하여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직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사건이 유동성리스크에 해당된다. 재무관리 담당임원(CFO)은 이러한 유동성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자금 조달과 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내·외부 원천에 기인한 리스크도 많다. 대표적으로 사후 서비스업무와 관련한 리스크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품질 불량이나 A/S에 대한 고객의 불만 등이다. 글로벌로 Value Chain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시되고 있다. 상기한 리스크 원천을 요약하여 예시하면 <그림 1> 리스크 원천: 예시와 같다.

<그림 1> 리스크 원천: 예시



## 〈 핵심 리스크 관리 운영에 고려할 사항 〉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핵심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운영시 고려 사항을 요약하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핵심적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 기업의 “Top 3 ~ Top 10 ”형태로 압축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리스크 발생가능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 운영한다. 리스크 대응조치에는 리스크 수용(accept), 회피, 감축, 전가, 추구를 대안적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CEO경영산책 #15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의 교훈”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리스크 발생에 따른 리스크 시나리오 플랜의 활용이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는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이 큰 기업의 주요 핵심적 리스크에 대응에 유용할 수 있다.

## 태양광 자가용 PPA 관련 사업자등록 & 업종 추가 문의

**Q** 현재 태양광 자가소비(자가용 PPA) 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투자사에서 진행하지만 설비는 저희 회사 소유이며, 저희 회사 이름으로 자가용 PPA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생산된 전기만큼 구독료를 매월 지불할 예정입니다.

생산된 전기는 자가소비하고 남은 전기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1. 상기와 같이 진행시, 정관 변경 및 사업자등록에 "태양력 발전업"을 꼭 추가해야하는 것일까요?
2. 만약 추가해야 한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출 과세표준명세서 해당종목(업태)의 매출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입금액제외로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3.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명세 입력칸이 5칸이며, 현재 5칸 모두 사용하여 신고를 하고 있어 추가할 수 있는 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부동산임대매출, 수입금액제외)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해서 과세표준명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4. 자가용 PPA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남은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5. 사업자등록 (업종추가)시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사업허가증"이 없으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6.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잉여전력 판매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까요?
7. 투자사에 매월 지급하는 구독료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A**

1. 우발적이고 일회성 공급이 아니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정관변경 및 사업자등록에도 추가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업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매출로 별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과세표준명세 입력과 신고관련된 구체적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발전업허가 관련 여부는 세법사항이 아닙니다.
5. 업종추가시 허가증이 필요한 부분은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증빙서류 대체관련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업종추가하여 사업적으로 판매공급하는 것이므로 잡이익이 아닌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7. 투자사와의 구체적 계약관계내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바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세금계산서를 당월1일~31일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차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있는데(1달치 거래)  
이부분을 당월 1일~15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16일~31일까지 분은 정상적으로 차월에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당월에는 지난달 한달치 + 15일분 에 대한 계산서 즉 2건이 발행이 되는것으로 되겠네요.

**A** 거래처별로 1억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15일의 기간동안만 합산하여 1일~15일분은 15일에 16일~30일분은 3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 렌탈관련 회계처리

**Q** 업무용 차량(승용차) 렌탈시 렌탈기간이 4년이면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용리스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렌탈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금융리스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므로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처리를 하는데 귀사가 리스업체와 운용리스로 계약했는지 금융리스로 계약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IFRS는 대부분 금융리스로 처리함)

# 12월말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초에 받는 성과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상담실 백종훈 차장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퇴직·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금을 연초에 지급한다거나, 1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12월말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10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12월말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를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애매한데,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등 퇴직소득지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2025년 1월 20일에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지급일인 2025년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의 다음 연도인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초에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가 아닌 일반적인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바, 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된다.

따라서 2024년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즉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내의 성과급지급규정에 의한 구체적 성과가 산정되어 각 종업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성과급의 실제 지급은 2025년 1월에 이루어지더라도 2024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도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외에 정성적 평가도 반영하여 각 개인별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2025년 1월이라면 2025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명세서도 2026년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서일46011-10528(2003.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8-20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동일)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5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40만원/인



### 증여재산 공제 개요

증여 주체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자녀·손자녀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 새해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 ▲ R&D 세액공제 확대
- ▲ 투자세액공제 확대
-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과세 특례
-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 근로장려금(ET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 인상
-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절차 간소화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 ▲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강화
-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 환급 특례
-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 ▲ 수도권 내 이전 세제 감면대상 축소
-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연장
-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금 소득세 감면 연장
-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 결혼세액공제 신설
-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 ▲ 소비자 상대 업종 추가
-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
- ▲ 혁신제품 임차 시범 구매
- ▲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 ▲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 ▲ SNS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지원

※ 전체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1월 15일자 안세재경저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탄탄한 관계 만드는 법 ②

### 2. 면담을 게을리하는 상사는 보너스를 삭감한다

‘상사는 부하와 매월 면담을 한다’고 룰북에 명기해 놓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싫어도 면담을 한다는 강제성이 없으면 어느샌가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상사와의 면담을 기다리는 부하직원은 없다. 그래서 고야마 노보루 사장은 상사와 면담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500엔씩 주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다. ‘귀찮지만 500엔을 받을 수 있다면야’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동시에 상사는 부하직원과의 면담을 게을리하면 보너스를 40퍼센트 깎는다. 40퍼센트나 보너스가 깎인다고 생각하면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사정 사정해서라도 면담을 한다.

구조란 이런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면담하는 동기는 불순해도 좋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너스가 깎이는 게 싫으니까’라는 이유라도 상관없다. 어떤 동기든 1대 1로 만나 면담하는 횟수를 늘려나가면 자연스레 탄탄하고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최신판례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에서  
육아휴직복귀자의 급여 없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소득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  
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  
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  
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23, 2024.06.20

### 질 의

- 질의인은 질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 '22.1.22. 질의사업장에 입사한 직원이 '22.11  
월 출산으로 '22.10.1. ~ '12.12.31. 기간은 출산  
휴가, '23.1.1. ~ '23.12.31. 기간은 육아휴직 후,  
'24.1.1. 당사로 복직하였음

###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 적  
용 대상 요건으로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  
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  
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  
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  
환한 이후 금액임

서면법규재산-3015, 2024.04.25

### 질 의

-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  
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서는 수정하지 않음  
-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  
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  
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  
증금액은 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 갱  
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  
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  
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  
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  
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  
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211, 2024.02.26

#### ■ 질 의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원아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함

질의

- 유치원의 경영자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기준법규법인-73, 2024.06.28

####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렌탈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렌탈자산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 조특법§130②의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임대법인(자문대상법인)의 렌탈사업장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업장(렌탈자산 사용장소)인지 여부

#### ■ 회 신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더 똑똑해진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도 알아서 '척척'

내년부터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할 필요없이 홈택스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준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택스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의 신용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해 홈택스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를 대신해 준다. 납세자는 정리된 목록을 본 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 후에는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재계산 된다.

이울러 개인 맞춤형 포털도 마련된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과 800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업무를 찾기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단에는 각종 신고 안내 등 '나에게 오는 알림'이나 세금 신고, 납부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냈고 하단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택스가 납세자에게 추천하는 메뉴로 맞춤형 페이지를 구성했다.

또한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하여 '인적용역 소득자'가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주는 식이다.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도 개통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준다.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추가 연장

정부는 올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까지 중과를 한 차례 유예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중부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공시가격 기준)은 상향한다. 건설형의 경우 기존에 9억원 이하였다면, 이를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없애고 입주자 선정 때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향후 남은 지분을 얻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외의 경우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등을 매입한 시행사, 건설사 등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도 인하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의 사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실인 상가를 주거와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축, 신축 건축물이 복합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로 공적 보증을 30조원 넘게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 1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1월 31일로 특별히 4일 연장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4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설 명절 '샌드위치 데이'여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에 겪어 왔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가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 되어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5.1월, 홈택스 확 바뀐다

- 국세청, 2025. 1

□ 국세청 (청장 강민수)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하였습니다.

## 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 (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①)

○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 (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해 보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출서류까지 안내되어 있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카페 운영 27세 윤○○]

## ②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 (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금액 ≤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 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합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주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합니다.

---

### ③ 개인 맞춤형 포털...그래도 궁금하다면 '지능형 검색' 이나 'AI전화상담'

---

-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합니다.
  -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❶)
  -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합니다. (❷)
- 또한,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합니다.
-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하여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줍니다.



테스트 중에 환급 받을 세금이 있는지 궁금해 '배달라이더'로 검색했는데, 관련 환급 화면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 배달라이더 42세 김○○]

- 그래도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 AI상담사(AI전화상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하였는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

#### ④ 민간 플랫폼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 3월 개통 예정

---

-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청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합니다.
- '25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입니다.
-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⑤ 홈택스 고도화 추진과정 및 개통계획

---

- '24년 초 홈택스 자문단 (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을 구성해 4천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였습니다.
  -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특히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됩니다.

#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보세요

- 국세청, 2025. 1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Ⅰ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내용 Ⅰ

번호	구분	제 목
1	상속주택 특례 적용대상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3	상속받은 건물의 취득가액	▶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
4	잔존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5	취득시기에 따른 수용감면 적용 여부	▶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상속 관련)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다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용 관련) 한편,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 상속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 사례 1, 2, 3
  - 수용 부동산 관련 실수사례 ☞ 사례 4, 5
-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경로 : [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

## 붙임 1 -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

- 개요
  -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 요건
  - [상속 주택]
  -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말함



※ 선순위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② ①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③ ①&②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일반 주택 ]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 혜택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붙임 2 -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개요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요건

-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거주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8년 자경)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 다만, 상속받은 농지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혜택

-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

### 붙임 3 -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

□ 개요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요건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1세대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것
- (취득 시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할 것
-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일 것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

- (비과세) 일부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
- (양도기한)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것

□ 혜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붙임 4 -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개요

-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함

□ 요건

- (취득)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 (수용)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양도기한) '26.12.31. 이전에 수용(양도)

□ 혜택

-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 까지) 적용

보상방법		감면율	비고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일반	15%	-
	3년 만기 특약	30%	특약 위반 시 15% 징수
	5년 만기 특약	40%	특약 위반 시 25% 징수

1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강한국씨는 기존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음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0원 → 77백만원

### [사례설명]

-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상속주택 특례).
- 다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강한국씨의 경우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보유기간이 더 짧은 C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유기간이 더 긴 B주택을 상속받은 형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 [체크포인트]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적용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인간 임의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개요

-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상속주택

-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으로서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말함

#### < 선순위 상속주택 >

-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② ①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③ ①&②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④ 피 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말함

### ✓ 해석 사례

2개 이상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주택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전-2024-법규재산-0433, 2024.06.20.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하여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김국세씨는 '19.7월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고 '24.6월 양도함(김국세 씨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가 양도

김국세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했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 감면세액 : 98백만원 → 0원

### [사례설명]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아 ①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거나 ②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김국세씨는 상속받은 농지를 본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 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체크포인트]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거나 ② 상속받은 농지를 재

촌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조특법§69)

- (개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함
  - ① (거주자 요건)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② (거주지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③ (8년 자경 요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 \*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 ④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
- (한도)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 경작기간 계산방법 (조특령§66④, ⑪, ⑫)

- 본인이 자경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
-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 양도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농지 양도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배제)

###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조특령§66⑭)

-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구분	기준금액	비고
총급여액 (소득법§20②)	연간 3천 7백만원 <sup>1)</sup> 이상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①, ②, ③의 소득은 제외함 ①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19①)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45②) ③ 농가부업소득(소득령§9)
사업소득금액 (소득법§19②)	연간 3천 7백만원 <sup>1)</sup> 이상	
총수입금액2) (소득법§24①, 소득령§208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 1) 3천 7백만원 요건은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총수입금액 기준은 '20년 귀속분부터 적용

✓ **해석 사례**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2016.06.0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

이한국씨는 부친이 '19.1월 10억원에 취득했다가 '19.4월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함  
 한편 이한국씨는 '21.5월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이후 세무서로부터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받음

\* 양도소득세 : 55백만원 → 93백만원

### [사례설명]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한국씨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세무서장이 10억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10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체크포인트]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가액이 해당 부동산 양도 시의 취득가액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소득령§163⑨)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 '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재산평가 방법 (상증법§60~§66)

- (평가원칙)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름
  -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시가평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적용함
  - ① 평가기간<sup>1)</sup>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 등<sup>2)</sup> 가액
    - 1)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 2)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및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된 금액
  - ③ (①, ②의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 (보충적 평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등 법령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수토지는 1세대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4.4월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함

한사랑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주택 등이 수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서 해당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한 관계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0원 → 77백만원

### [사례설명]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사랑씨는 주택 등의 수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체크포인트]

- 아울러 위와 같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만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소득령§154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중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 해석 사례 1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해석 사례 2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2.04.23. )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현행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

5

##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박문수씨는 '21.8월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22.1월 사업인정이 고시됨

박문수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된 것이므로 수용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수용감면 대상이 아닌 관계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 감면세액 : 23백만원 → 0원



### [사례설명]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박문수씨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체크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의 절차 없이 국가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수용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77)

- (감면 대상)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대상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감면 요건)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 ② '26.12.31. 이전에 양도
- (감면율) 보상받는 방법(현금, 채권)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 ① 현금보상 10%
  - ② 채권보상 15%
  - ③ 3년 만기 특약 시 30%(특약 위반 시 15% 징수)
  - ④ 5년 만기 특약 시 40%(특약 위반 시 25% 징수)

✓ **해석 사례 1**

임야가 수용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0.01.14.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해석 사례 2**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 서면법규과-462, 2014.5.2. )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7일 (금)	12월 30일 (월)	12월 31일 (화)	1월 2일 (목)
미 달 러 (USD)	1462.90	1474.10	1470.00	1470.00
일 본 엔 (JPY)	927.00	934.31	936.48	934.67
영 국 파 운 드 (GBP)	1832.21	1855.38	1843.67	1839.41
캐 나 다 달 러 (CAD)	1015.16	1023.40	1023.96	1022.50
홍 콩 달 러 (HKD)	188.32	189.89	189.30	189.23
위 안 화 (CNH)	200.19	202.38	201.27	201.27
유 로 화 (EUR)	1524.85	1537.85	1528.73	1521.96
호 주 달 러 (AUD)	909.92	918.73	913.68	909.71
싱 가 폴 달 러 (SGD)	1076.33	1085.77	1081.08	1076.4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7.34	329.67	329.23	328.7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한국회계기준원, 2025. 1

##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하, 'K-IFRS')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함('24.11.22 (金)) 의결)

\* 문단 간 일관성 제고 및 의미 명확화 등 비교적 경미한 내용을 개정함

- 이 개정 내용은 '26.1.1.부터 시행하되, 조기적용 가능

## 2. 주요 내용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 ① (제1109호 '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하, 'SPPI\*') 관련 규정 명확화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 ②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추가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 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특정 문단(B5, B6)이 사용하는 용어 및 참조 문단을 제1109호와 일치시킴\*

\* (용어 일치) 조건 → 적용 조건 / (참조 문단 명확화) 문단 B5 →제1109호 문단 6.4.1(1) 참조,

문단 B6 → 제1109호 문단 6.4.1(2)~(3) 참조

- ②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준서 내 문단 간 참조를 수정\*하고, 일부 용어(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를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과 일치시킴
  - \* 문단 B38이 과거 개정으로 삭제된 문단 27A를 참조하는 것을 K-IFRS 제1113호 문단 72~73을 참조하도록 수정
  - 또한 일부 적용사례가 본문의 용어 및 내용과 일관되도록 수정하고, 실무적용지침이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 \* 기준서 적용사례 문단 IG14를 관련 문단 28과 용어가 일관되도록 수정
- ③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 제거 시, 금융상품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따라 제거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함을 명확히 하고, 매출채권 측정과 관련하여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의한 측정과의 일관성 확보
- ④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74에 언급된 ‘사실상 대리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단 B73과 일관되게 수정
- ⑤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cost method)’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at cost)’로 대체

### 3. 향후계획

-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 질의회신 절차를 통해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

## 붙임 -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①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24. 11. 22.	‘26. 1. 1.	‘24. 12. 24.
②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조기적용 가능. 다만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의 적용지침에 대해서만 조기적용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K-IFRS 제1109호 문단 7.1.13(2), BC7.102)

#### (1)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 (주요내용) 다음의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이하, ‘SPPI’) 관련 규정 명확화
  -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예: ESG 목표달성시 금리가 조정되는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SPPI 평가 방법 명확화(문단 B4.1.10, B4.1.10A)
  - 비소구(non-recourse) 특성\*1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의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SPPI 평가원칙\*2을 명확히 함(문단 B4.1.16A, B4.1.17, B4.1.20, B4.1.20A)
    - \*1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최종 권리(ultimate right)가 특정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특성
    - \*2 비소구 특성이 있더라도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부족분을 채무자가 발행한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상품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경우, SPPI 충족 가능
-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결제 시 지급지시와 실제 지급에 시차가 있는 경우, 특정 요건 충족시 지급지시 시점에 부채가 미리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문단 B3.3.8)

#### (2) 금융상품: 공시(K-IFRS 제1107호)

□ (주요내용) 다음의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 추가(문단 11A, 11B)

-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문단 20C)\*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FVPL)은 이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시 범위에서 제외(문단 BC35ZZA)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K-IFRS 연차개선>			
①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24. 11. 22.	‘26. 1. 1.	‘24. 12. 24.
②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③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④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⑤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조기적용 가능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K-IFRS 제1101호)**

- (주요내용) K-IFRS 제1101호 문단 B5~B6을 개정하여, K-IFRS 제1109호의 문단을 올바르게 참조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 참조 문단(문단 B5→제1109호 문단 6.4.1(1) 참조, 문단 B6→제1109호 문단 6.4.1(2)~(3) 참조)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용어(조건→적용조건)도 제1109호의 용어로 일치시킴

**(2) 금융상품: 공시(K-IFRS 제1107호)**

- (주요내용) K-IFRS 제1107호 본문과 실무적용지침을 개정
  - (본문) K-IFRS 제1107호 문단 B38이 과거 개정으로 삭제된 문단 27A를 참조하는 것을 K-IFRS 제1113호 문단 72~73을 참조하도록 수정하고, K-IFRS 제1113호에서 사용하는 문구\*와 일관되게 수정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실무적용지침) K-IFRS 제1107호 문단 28과 용어 및 내용이 일관되도록 적용사례(IG14)를 개정하고, 실무적용지침이 같은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3)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 (주요내용) K-IFRS 제1109호 본문의 다음 두가지 내용을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K-IFRS 제1109호 문단 2.1(2)에서 문단 3.3.3을 추가\*함으로써, 리스부채 제거시, K-IFRS 제1109호에 따라 제거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나) 문단 3.3.1과 3.3.3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거래가격) K-IFRS 제1109호 부록 A(용어의 정의)에서 거래가격(K-IFRS 제1115호의 정의)을 삭제하고, 문단 5.1.3을 개정\*하여 매출채권 측정과 관련하여 K-IFRS 제1115호와의 일관성 확보
    - \*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함

### (4) 연결재무제표(K-IFRS 제1110호)

- (주요내용) 문단 B74에 언급된 ‘사실상 대리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단 B73과 보다 일관되게 수정
  - 문단 B73은 ‘사실상 대리인’에 대해,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성격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기존 문단 B74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규정하여 양 문단 간 표현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었음

### (5) 현금흐름표(K-IFRS 제1007호)

- (주요내용) ‘원가법(cost method)’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at cost)’로 대체(문단 37)
  - 과거 ‘중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개정(K-IFRS 제1101호와 제1027호의 개정)으로 ‘원가법’의 정의가 삭제되었기 때문임

#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5. 1

## 주요 내용

◆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기업 Check Point)

-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 √ (감사인 Check Point)

-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 1 자기책임 下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

□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제출의무	□ 주권상장법인,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제출대상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방식	□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제출기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 (주권상장법인) ('20년) 22사 → ('21년) 37사 → ('22년) 24사  
(비상장법인) ('20년) 140사 → ('21년) 115사 → ('22년) 192사
-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미제출
- \* ('20년) 22사 中 17사 → ('21년) 37사 中 36사 → ('22년) 24사 中 23사

### [참고] 주요 위반 예시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종료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1일 지연하여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일(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법규 인식 미비)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 유의사항

- ▶ (기업)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下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 금지
-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

2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공시 철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24년은 기존 모범규준 적용 가능)됨에 따라,
  -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신규 공시할 의무
    - \* 상장회사 및 대형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구분	설명
도입 배경	□ 회사가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22.10.6.)」 中 ‘공시 강화 방안’의 일부)
대상 회사	□ 상장회사, 대형 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 §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공시 시기*	□ ‘24사업연도 선택,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24사업연도에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시 동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관련 규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5호 차목 및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별첨 1)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회사 제외)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li> <li>▶ (외부감사인)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 감사 수행</li> </ul>

※ 참고 보도자료

-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히, 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24.11.11.) 등

### 3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4.6월)한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최근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4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24.6월)
- \*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 '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유의사항

▣ (공 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평가방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여 공정가치(제1113호) 및 회수가능액\*(제1036호) 등을 산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수행 필요
- ③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수익기준서(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제1024호)을 충실하게 공시
-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및 사업자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공시(「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0.) 참고)

※ 참고 보도자료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4.6.14.)



#### 4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주의·경고조치로 종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회계오류 예방·정정)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3년 중 9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 전체 상장사('23년말 2,642사)의 3.6%이며 '21년 160사, '22년 131사에서 감소 추세

유의사항

- ▶ (기업)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 ▶ (외부감사인) 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 ▶ (공통)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
    -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 등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 참고 보도자료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9.)
- ‘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23.3.10.)
- ’22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23.7.6.)
-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23.7.14.)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23.11.30.)

5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 분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

-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에 퇴출이 필요

◆ 가공의 매출 계상 사례

- (A사)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
- (B사) 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하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매출 허위계상

-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유의사항

- (외부감사인) '24년 외부감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 ①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제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
  - ②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증빙\* 확보
    - \*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
  - ③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외감법 제22조) 준수 및 회사의 조사 결과 등 확인

※ 참고 보도자료

-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해 한계기업을 조기 퇴출시키겠습니다('24.11.27.)

6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 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참고]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관련)
  - (1) A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평가시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사용가치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2) B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청산결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수익인식 기준 적용 관련)
  - (1) C사는 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은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선적시점에 일괄적으로 수익을 인식
  - (2)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D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입원가가 예상원가를 초과하자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이후 누적된 공사미수금을 전액 대손비용으로 상각
- (무형자산 관련)
  - (1) E사는 연구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인건비 총액을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모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
  - (2) F사는 G사와 공동개발한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G사에게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 이는 무형자산(전용실시권)에 해당함에도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

유의사항

- ▶ (공통)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회계처리적용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20.8.21., '21.6.29., '21.12.30., '22.6.29.)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23.11.27.)
-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24.5.3.)
-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24.9.11.)

#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5. 1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 (10억→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 고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 추세입니다. '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은 4억 7백만원으로 전년(251백만원)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814만원으로 전년(3,131만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측면에서도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2.07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건수 : ('21년) 125 ('22년) 130 ('23년) 141 ('24년) 179

\*\* 연도별 포상금 총지급액(단위 : 백만원) : ('21년) 229 ('22년) 70 ('23년) 251 ('24년) 407  
연도별 포상금 지급건수 : ('21년) 5 ('22년) 3 ('23년) 8 ('24년) 7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외상매출금 및 재고자산 조작을 통한 분식회계 내부제보

-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위하여 고의로 현금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과대계상된 현금을 기말에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임의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하였음. 또한,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 및 과대계상하였음
- ☞ B은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였고,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됨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계부정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여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증권위·금융위는 이 중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였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회계부정신고 관련 주요 Q&A

1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신분보호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2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18.11월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수행

3

**익명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 여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참고 2 - 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1 신고대상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 ②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 ③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 ④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 ⑤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 2 신고요건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